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10
----------	-------

발의연월일 : 2022. 5. 6.

발 의 자 : 박대출 · 김상훈 · 김선교
김성원 · 박덕흠 · 박성중
이명수 · 이 영 · 조명희
하영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세계보건기구는 조리공간에서 음식의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 증가 원인으로 제시한 바 있고, 최근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 받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세먼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실태조사의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미세먼지 실태조사의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이 조리초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리초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신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급식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조리공간”이라 한다)에서 음식의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이하 “조리초미세먼지”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① 환경부장관은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생 략) <u><신 설></u>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급식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조리공간”이라 한다)에서 음식의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조리세면지(이하 “조리 조리세면지”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u> <u>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u>
<u>②·③ (생 략)</u> <u><신 설></u>	<u>제13조의2(조리조리세면지 저감 시범사업) ① 환경부장관은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조리세면지를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u> <u>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u>